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99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문진석 · 박정현 · 손명수
이정문 · 강준현 · 최혁진
복기왕 · 맹성규 · 이재관
김교홍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 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의 휴면예금등 출연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출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휴면예금등을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등의 정의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포함하고, 휴면예금등 원

권리자의 범위에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0조제1항).

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의 출연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라. 출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예금등”을 “예금등 또는 선불충전금”으로 한다.

2의2. “선불충전금”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을 말한다.

나. 휴면선불충전금: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의 선불충전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

제24조제1항제12호 중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를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또는 선불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를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휴면선불충전금의 경우: 휴면선불충전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선불충전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원권리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휴면예금등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 단서 중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면예금등의 출연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2. “선불충전금”이란 「전자</u> <u>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 따</u> <u>른 선불충전금을 말한다.</u>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나. 휴면선불충전금: 「전자</u> <u>금융거래법」 제25조의2에</u> <u>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u> <u>업자”라 한다)의 선불충전</u> <u>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u> <u>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u> <u>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u> <u>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u> <u>다. (현행 나목과 같음)</u>
<u>나. (생 략)</u>	4. ----- ----- <u>예금등 또</u> <u>는 선불충전금</u> ----- -----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 멸시효가 완성되어 <u>예금등</u> 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 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	

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
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5. ~ 8. (생략)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진흥원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 11. (생략)

12. 제40조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이하 “금융회
사등”이라 한다)이 휴면계정
에 출연한 휴면예금등의 관리
· 운용

13. ~ 16. (생략)

② ~ ④ (생략)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금
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자료를 진흥원에 제
출하여야 한다.

-----.

5. ~ 8. (현행과 같음)

제24조(진흥원의 업무) ①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금융회사, 예
탁결제원 또는 선불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13. ~ 1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① -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② -----

---때에는-----

-----.

1. (생략)

<신설>

2. (생략)

<신설>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
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
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

1. (현행과 같음)

1의2. 휴면선불충전금의 경우:

휴면선불충전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
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선불
충전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료. 다만, 선
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
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
다. 이하 같다)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어 휴면예금등 원권리
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원권리자의 정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휴면예금등
을 출연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등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
등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
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
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
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8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발행대금, 실기
주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휴면선불충전금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

-----발행대금, 실기주 과실
또는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휴면선불충전금-----.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
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